

의안번호	2215627
의 퇴 인	윤후덕의원
회 답 일	2026.3.26.
추계번호	25D662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혐오표현 피해자의 진정 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7명 증원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5억 3,300만원(연평균 9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 수립	71	0	0	0	0	71	14
혐오표현 피해자의 진정 및 시정명령	868	858	884	912	940	4,462	892
합계	939	858	884	912	940	4,533	9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혐오표현 규제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혐오표현 방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주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 (진정)	혐오표현을 당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진정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함(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9조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혐오표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혐오표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혐오표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	-
2	안 제8조 (진정)	○	-
3	안 제9조 (시정명령)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혐오표현을 당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혐오표현의 중

지, 피해의 원상회복, 혐오표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혐오표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

○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유사 연구용역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 제정안에 따라 혐오표현을 당한 자의 진정 시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할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혐오표현 관련 진정 시, 조사 실시,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1개과를 신설하고 7명(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단년도 한시조직으로 혐오표현대응과(과장 포함 3명)가 신설되어 관련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시정권고 및 명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 혐오표현대응과나 차별시정총괄과의 업무의 연속성이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으나 추계에서는 인력의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음

○ 인건비 단가는 2026년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추정

○ 증원인력이 사용할 업무공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¹⁾

○ 혐오표현 규제 관련 사업비는 추계에서 제외함²⁾

□ 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교육원 신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사업에 2026년 2억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으로 혐오차별 개선 사업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혐오표현 규제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혐오표현 방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주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함
- 추계에서는 시행 첫해인 202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유사 계획의 정책연구용역 사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표 2]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사 정책연구용역 사례

(단위: 천원)

용역명	연도	수행	금액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5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80,0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2025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75,000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방안 연구	2025	사단법인 피스모모	47,000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202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2024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59,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표 3]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0	합계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 수립	71	0	0	0	0	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혐오표현 피해자의 진정 및 시정명령 등(안 제8조, 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라 혐오표현을 당한 자의 진정 시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실시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이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7명으로 가정함
- 충원인력의 구성은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등임
 - 인건비 단가는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추정

[표 4]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	4급	5급	6급	7급
인건비 단가	151,730	122,260	97,046	75,123	59,88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³⁾을 적용하여 산출함
- 기본경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총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임차료 제외) 비율(11.6%)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2027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7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6년 1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⁴⁾를 곱하여 산출함

[표 5]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668	688	709	730	752	3,548
기관부담금	87	90	94	97	101	469
기본경비	77	80	82	84	87	410
자산취득비	36	0	0	0	0	36
합계	868	858	884	912	940	4,4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6. 1.)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0
기관부담률(%)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4) 2027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080,000원임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혐오표현 피해자의 진정 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7명 증원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5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 수립	71	0	0	0	0	71
혐오표현 피해자의 진정 및 시정명령	868	858	884	912	940	4,462
합계	939	858	884	912	940	4,5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혐오표현 피해자의 진정 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규모를 7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